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68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8월 24일

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대, 유용, 서unki, 김선갑,
장흥순, 조상호, 오승록, 오경환,
이윤희, 박unki, 우미경, 박마루,
김동승, 최관술, 오봉수, 박기열,
김생환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와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그러나, 현재 양천구를 비롯하여 각 구청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이용률은 해당 지역보다 타 지역의 학생 및 주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, 서울시는 자치구에 체험장 시설의 설치비만 일부 지원해 줄 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, 해당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- 따라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 첨
- 다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<u>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. ~ ③. (생략)</p>	<p>제13조(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<u>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. ~ ③. (현행과 같음)</p>

【관계법규】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·군·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1조(자전거 타기 교육 등)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3조(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·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·융자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용 발생
 - 동 조례 제13조(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·운영)
 -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4. 상세 추계내역

- 대상 : 총17개소(자치구 15개소, 한강사업본부 2개소)
 - 용산구, 성동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노원구, 양천구, 구로구, 강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관악구, 서초구, 송파구, 강동구, 한강사업본부(상암동, 천호동)
- 전제
 - 1) 기 운영비가 지원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 : 1개소(송파구)
 - 2) 비지원 대상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은 비용추계에 포함 : 16개소(용산구, 성동구 등 16개소)
 - 한강사업본부(난지, 광나루 교육장)의 이색자전거체험장은 외부 입찰로 운영되었다가 현재는 미운영 상태임. 그러나 추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에 포함
 - 3) 기 설치비가 지원된 11개소(성동구, 동대문구 등)에 대한 추가 설치비용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에 비포함

- 4) 운영비 지원은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하되, 지원은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
- 5) 물가상승률 미반영
- 6) 비용은 201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○ 산출방법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 (1\text{군 자치구}(3\text{개소}) \text{ 운영비 } 70\% \text{ 지원})_i + \sum_{i=1}^5 (2\text{군 자치구}(10\text{개소}) \text{ 운영비 } 60\% \text{ 지원})_i + \sum_{i=1}^5 (3\text{군 자치구}(4\text{개소}) \text{ 운영비 } 50\% \text{ 지원})_i + \sum_{i=1}^5 (4\text{군 자치구}(0\text{개소}) \text{ 운영비 } 30\% \text{ 지원})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16~2020년)

-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(1개소) 운영비 : 20,000천원
 - 운영비에는 자전거 수리비, 인쇄비, 차량임차료, 보험료 등 포함
- ※ 서울특별시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(안) 「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운영」의 운영비 항목 준용
- 자치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의 운영비 지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
 - 근거: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3조

〈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 지원조건〉

구 분	1군	2군	3군	4군
재정력	40~50%미만	50~70%미만	70~100%미만	100%이상
보조율	70% 이내	60% 이내	50% 이내	필요시 30% 이내
자치구 재정 총족도 (2013년)	5개구 (중랑,성북,강북,도봉,노원)	13개구 (성동,광진,동대문,은평,서대문,마포,양천,강서,구로,금천,동작,관악,강동)	5개구 (종로,용산,영등포,서초,송파)	2개구 (중구, 강남)

○ 산출결과(총비용) ≍ 960백만원

- [{20,000천원(운영비) × 70%(1군 지자체의 보조율) × 3개소(중랑구 등)} + {20,000천원(운영비) × 60%(2군 지자체의 보조율) × 10개소(성동구 등)} + {20,000천원(운영비) × 50%(3군 지자체의 보조율) × 3개소(서초구 등)}] × 5년(2016~2020년)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합계
구분	세입	-	-	-	-	-	-
세출	1군 자치구(A)	42	42	42	42	42	210
	2군 자치구(B)	120	120	120	120	120	600
	3군 자치구(C)	30	30	30	30	30	150
	4군 자치구(D)	0	0	0	0	0	0
총 비용(A+B+C+D)		192	192	192	192	192	960

주 : 1. 추계기간 동안 물가인상분 제외

2. 1군 자치구 3개, 2군 자치구 10개, 3군 자치구 3개(송파구 제외), 4군 자치구 0개

5. 작성자

○ 예산정책담당관 원동아 분석관(02-3705-1285)